

의안번호	2220346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0.
추계번호	26B3946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8조의3 신설(출하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)	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,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<u>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.</u>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, 경매·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	의무·재량 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8조의3 신설(출하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)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등급표준화 검사 실시(안 제38조의3제2항)

- 개정안은 도매시장 출하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¹⁾ 및 제5조의2에 따른 권장 품질표시²⁾를 하도록 하고,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

1)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(표준규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(축산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(이하 "표준규격"이라 한다)을 정할 수 있다.

2)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조의2(권장품질표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

농산물이 표준규격 및 권장품질표시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임

-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도는 현행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라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표준규격(포장규격과 등급규격)을 정하고,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는 제도로, 2025년 기준 농산물 82개, 수산물 10개 및 임산물 36개 품목의 표준규격이 각각 고시되어 있음
-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제도는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 중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포장 겉면에 등급·당도 등의 농산물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³⁾, 현행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르면 표준규격에 맞지 않거나 표준규격이 없는 등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경우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 및 권장품질표시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할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급표준화 검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[표 1]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

구분	개소	비고
공영도매시장	33	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
일반법정도매시장	13	민간의 투자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
민영도매시장	3	민간인 등이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
총계	49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산물(축산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·당도 등 품질을 표시(이하 "권장품질표시"라 한다)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3) 현행법은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,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권장품질표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

- 다만, 개정안은 등급표준화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도매시장별 등급표준화 검사 대상과 규모 그에 따른 적정 검사 장비 및 인원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: 표준규격 고시 농산물 현황

연번	구분	품목수	세부품목
1	과실류	11	① 사과, ② 배, ③ 복숭아, ④ 포도, ⑤ 감귤, ⑥ 금감, ⑦ 매실, ⑧ 단감, ⑨ 자두, ⑩ 참다래, ⑪ 블루베리
2	채소류	25	① 마른고추, ② 고추, ③ 오이, ④ 호박, ⑤ 단호박, ⑥ 미니단호박, ⑦ 가지, ⑧ 토마토, ⑨ 방울토마토, ⑩ 송이토마토, ⑪ 참외, ⑫ 딸기, ⑬ 수박, ⑭ 조롱수박, ⑮ 멜론, ⑯ 피망, ⑰ 파프리카, ⑱ 양파, ⑲ 마늘, ⑳ 무, ㉑ 결구배추, ㉒ 양배추, ㉓ 당근, ㉔ 브로콜리, ㉕ 비트
3	서류	2	① 감자, ② 고구마
4	특작류	5	① 참깨, ② 피땅콩, ③ 알땅콩, ④ 들깨, ⑤ 수삼
5	버섯류	5	① 느타리버섯, ② 큰느타리버섯(새송이버섯), ③ 양송이버섯, ④ 팽이버섯, ⑤ 영지버섯
6	곡류	14	① 쌀, ② 찰쌀, ③ 현미, ④ 보리쌀, ⑤ 좁쌀, ⑥ 율무쌀, ⑦ 콩, ⑧ 팥, ⑨ 녹두, ⑩ 찰수수쌀, ⑪ 찰기장쌀, ⑫ 메밀, ⑬ 옥수수(팝콘용), ⑭ 옥수수쌀
7	화훼류	20	① 국화, ② 카네이션, ③ 장미, ④ 백합, ⑤ 글라디올러스, ⑥ 튜울립, ⑦ 거베라, ⑧ 아이리스, ⑨ 프리지아, ⑩ 금어초, ⑪ 스타티스, ⑫ 칼라, ⑬ 리시안시스, ⑭ 안개꽃, ⑮ 스토크, ⑯ 공작초, ⑰ 알스트로메리아, ⑱ 포인세티아, ⑲ 칼랑코에, ⑳ 시클라멘
총계		82	-

자료: 「농산물 표준규격」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5-6호)

[참고자료 2]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: 표준규격 고시 수산물 현황

연번	구분	품목수	세부품목
1	수산물 (신선어패류)	3	① 생굴, ② 바지락, ③ 꼬막
2	수산가공품 (냉동품 포함)	7	① 북어, ② 굴비, ③ 마른문어, ④ 새우젓, ⑤ 멸치젓, ⑥ 냉동오징어, ⑦ 간미역
총계		10	-

자료: 「수산물 표준규격」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-34호)

[참고자료 3] 산림청: 표준규격 고시 임산물 현황

연번	구분	품목수	세부품목
1	수실류	13	① 밤, ② 견대추, ③ 생대추, ④ 뽕은 감(생감), ⑤ 홍시, ⑥ 꽃감, ⑦ 깎갓, ⑧ 호두, ⑨ 은행, ⑩ 다래, ⑪ 복분자, ⑫ 산딸기, ⑬ 석류
2	버섯류	7	① 건표고, ② 생표고, ③ 송이, ④ 건꽃송이, ⑤ 생꽃송이, ⑥ 건목이, ⑦ 생목이
3	산나물류	10	① 건취나물, ② 생취나물, ③ 건고사리, ④ 생고사리, ⑤ 더덕, ⑥ 생도라지, ⑦ 두릅(삽수두릅, 잎두릅), ⑧ 죽순, ⑨ 건고려엉겅퀴(곤드레), ⑩ 생고려엉겅퀴(곤드레)
4	약용류	4	① 건오미자, ② 생오미자, ③ 건산수유, ④ 건구기자
5	약초류	1	① 산양삼
6	수목부산물류	1	① 수액
총계		36	—

자료: 「임산물 표준규격」(산림청고시 제2025-34호)